

국적법 개정 관련 내용

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를 원천봉쇄하기 위한 새 국적법이 지난 5월 24일 공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.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된 이후 1800여명의 국적이탈자들이 생기는 등 사회문제화되기도 한 새로운 국적법, 법무부에서 밝힌 국적법 개정 관련 내용을 알아보자.

1. 개정 국적법 내용

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기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음.

2. 개정 국적법 적용 대상

- 외국에 원정하여 출산하는 경우
- 기타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하다가 출산하는 경우
 - 부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유학, 상사주재원, 외교관 등으로 생활하다가 출산하는 경우가 해당됨.

※ 영주할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

- 부모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
- 부모가 출산 후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
- 부모가 외국에 체류하다가 외국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에서 출산한 경우
- 부모가 외국에서 출산 후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신청한 경우 등

3. 시행 시기 : 2005. 5. 24

4. 국적이탈시 불이익

■ 체류 자격

- 재외동포 체류자격(F-4)
 - 국적이탈자가 가족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함.
- 외국인 체류자격
 -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이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받고 외국인 등록을 신청해야 함.(체류기간만료 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, 방문동거자격 1회 부여. 상한은 2년 임)
 -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방문동거(F-1)자격을 부여하나, 대학교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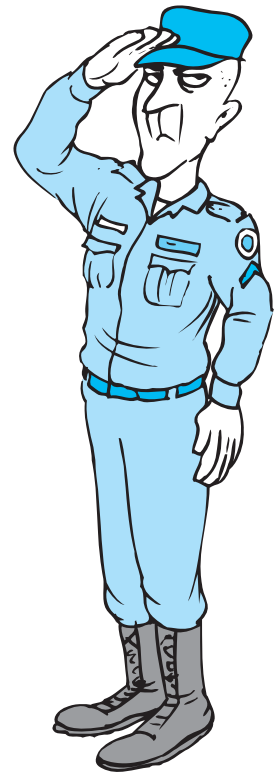
- 입학할 경우에는 유학(D-2)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함.
- 대학 졸업 후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비자(E-1 ~ E-7)를 소지하여야 하나 취업비자는 국민의 대체가 불가능분야에 국한되어 있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게 됨.

※ 불법취업자인 경우 사안에 따라 강제퇴거의 대상


- 해외에 일시 출국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.
- 국내에서 형사상의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강제퇴거 대상임.

5. 출입국 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

- 국적 이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부여를 받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의 벌금(제23조, 제94조)
- 국적 이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체류자격 부여와 동시에 외국인등록을 하여야하나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(제31조, 제95조)
- 허가 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의 벌금(제25조, 제94조)
-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하다가 적발되는 경우,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,000만원 이하의 벌금(제20조, 제94조)
-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경우 입국시 새로운 비자를 받아야 하며, 비자가 없으면 미국 국적인 경우 90일 미만의 단기간 체류는 가능하나 장기 체류는 불가



■ 국적회복

-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경우 국적회복 불허(국적법 제9조 제2항)
 - 병역을 기피할 목적인지 여부는 국적회복 허가신청시 철저한 심사
 - 개정국적법 시행전 국적이탈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불여지가 많음. 

〈 출처 : 법무부 <http://www.moj.go.kr> 〉